# 올림픽기념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

감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,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사업장 운영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Ι	감사실시 개요
	감사목적
0	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업무처리의 적정성 검토 및 적극적인 행정분위기 유도
0	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로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
	감사대상 : 2013. 7월 이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실태 전반
	감사기간 : 2015. 9. 21(월) ~ 9. 25(금)
	감사중점
O	회계ㆍ계약, 시설물유지ㆍ관리, 일반운영ㆍ사무등 업무분야별 적정성 점검

O 주차장 등 시설물 관련 운영·관리실태 점검

O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

# Ⅱ 감사결과

# [회계·계약 분야]

# □ 수영장 수처리제 구입에 관한 사항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·구매·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, 2013. 1. 1 ~ 2015. 8. 31 기간 중 수처리 제 구입과 관련하여 총 21차례에 걸쳐 매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.

#### 감사실의견

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 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 [개선]

# □ 지출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

- 공단 회계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그 마 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매일 마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 2015. 9. 7
  - ~ 9. 25까지 19일간 자금지출기록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하고, 2015. 9. 15
  - ~ 9. 24까지 10일간 일일수입금정산이 미정산 되어 있음.

#### 감사실의견

■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가 매일 정리될 수 있도록 지출 및 수 입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[주의]

# □ 부서업무비 사전품의 위반

○ 공단 회계규정 제90조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먼저 지출 품의 ·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, 2013. 7. 1 ~ 2015. 8. 31 기간 중 총13건 (2,091,700원)의 부서업무비 지출에 대해 사전품의 없이 카드를 먼저 사용 한 사실이 있음.

#### 감사실의견

■ 부서업무비 지출시 반드시 사전에 품의 후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

#### [주의]

# □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

- O 현재 임대시설물에 대한 계약시 연간 임대료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2차 연도 이후 임대료 산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, 2013. 3. 1자 2층 다목적실 임대계약시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계약조건보다 30일 부족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의하면 2차 연도 이후 및 갱신시 산식에 의거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하였고, 2015. 3. 6자 1층 매점 감정평가시 당초 계획변경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.

# 감사실의견

■ 임대계약 체결시 주요사항이 계약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, 제출서류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며, 대부료 산정시 관련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고, 감정평가 전 대상물건에 대해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[주의]

# [ 시설물유지 · 관리 분야 ]

#### □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·운영 사무의 위·수탁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시설이용 불편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, 수영장 바닥 및 천정의 청소상태가 양호하지 않고, 건물 서쪽 외장벽 타일 탈락, 창호 시트지 노후, 건축자재(석재물) 방치, 수영장덕트 환기구 근처의 환경정비 상태가 미흡함.

# 감사실의견

■ 이용객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[시정]

# □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에 도, '○○○ 보수 및 ○○○○ 정비공사' 외 6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

# 감사실의견

■ 공사 준공 후 담보기간 중 하자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, 하자 발견 시 업체에 대해 하자 보수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[주의]

# [일반운영 · 사무관리 분야]

# □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공단 소프트웨어 관리내규 제5조에 의하면 부서관리자는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 2015. 6월 이전의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

# 감사실의견

■ 관련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도록 조치 [주의]

# ☐ CCTV임대용역에 관한 사항

O CCTV임대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상 업체가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 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, 이에 대한 관리·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# 감사실의견

■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따라 적시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[주의]

# □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O 2014년도 중 구입한 농약 중 일부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, 포장 재 폐기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.

# 감사실의견

■ 농약 구입시 반드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,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도 심공원으로 이관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조치 [주의]

# 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-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,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
-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새로운 고객관리시스템으로 교체를 이유로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2015. 6. 23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담당자의 관련사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# 감사실의견

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며, 인사이동시 개인정보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[주의]

# [ 경영개선 분야 ]

# □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O 수영장 현황

(2015. 9월말 현재)

시설	수영강사	이용객수	이용수입
25m×7레인	7명	152,965명	527백만원

#### ○ 수영장 운영의 주요 문제점

· 수영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습도가 매우 높아 바닥청소가 어렵고, 강 사대기실도 지하에 있어 환기, 채광이 잘 안 되어 근무환경 열악

# 감사실의견

■ 수영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습도가 높으므로 환기시설을 자주 가동하고, 강사대기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 강사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[통보]

# □ 헬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2015. 1. 12.자 시설 개·보수 및 프로그램 신설 관련 보고서를 통해 헬스클럽 운영시 예상이익 제시와 함께 헬스클럽 설 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서의견을 보고한 사실이 있음.
- 당초 계획에 의하면 수탁기간(2017년말)까지 12,200천원 흑자를 예상하였으나, 현재 헬스장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오히려 적자가 예상됨.

#### 감사실의견

- 헬스장의 경우 초기 시설비와 운영기간내 인건비가 고정비 성격으로, 원 가구조상 고정비 비중이 매우 커 매출의 증감에 따라 이익이 큰 비율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짐
- 따라서 <u>조속한 시일내에 헬스장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</u> 헬스 장 이용인원을 현행 130명 수준에서 최소 <u>손익분기점 수준(월163명) 이</u> <u>상 확보</u>하도록 통보 [통보]

# □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○ 주차장 현황

위치	면적	주차대수	비고
계	<b>2,735</b> m²	132대	
건물 동편	<b>865</b> m²	32대	기존 주차장
입구	<b>220</b> m²	21대	임시(인도)
건물 뒤편	<b>1,650</b> m²	79대	임시(운동장)

#### ○ 문제점

- · ○○○○○○○○○ 차량 출입구가 동일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서로 섞여 구분이 곤란
- · 원래 주차장 면수는 32대에 불과하여 인도와 운동장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 중임(100대분 추가)
- 뒤편 주차장은 비포장으로 우천시 토사가 일부 유출되고 흙탕물이 튐
- 오전시간대(10시~12시)가 가장 혼잡하며, 그 외 시간대는 문제없음.

# 감사실의견

■ 뒤편 주차장의 경우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이용객이 불편하므로 <u>혼</u>합골재를 포설하거나, 콘크리트, 아스콘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 [통보]